

#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

전화상담  
한부모(미혼모·부) 상담전화  
**1644-6621**

온라인상담  
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용  
**[www.mogef.go.kr](http://www.mogef.go.kr)**

※ 본 안내서의 내용은  
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도 확인 및  
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



여성가족부



복권위원회

2023년  
한부모가족  
복지서비스  
종합안내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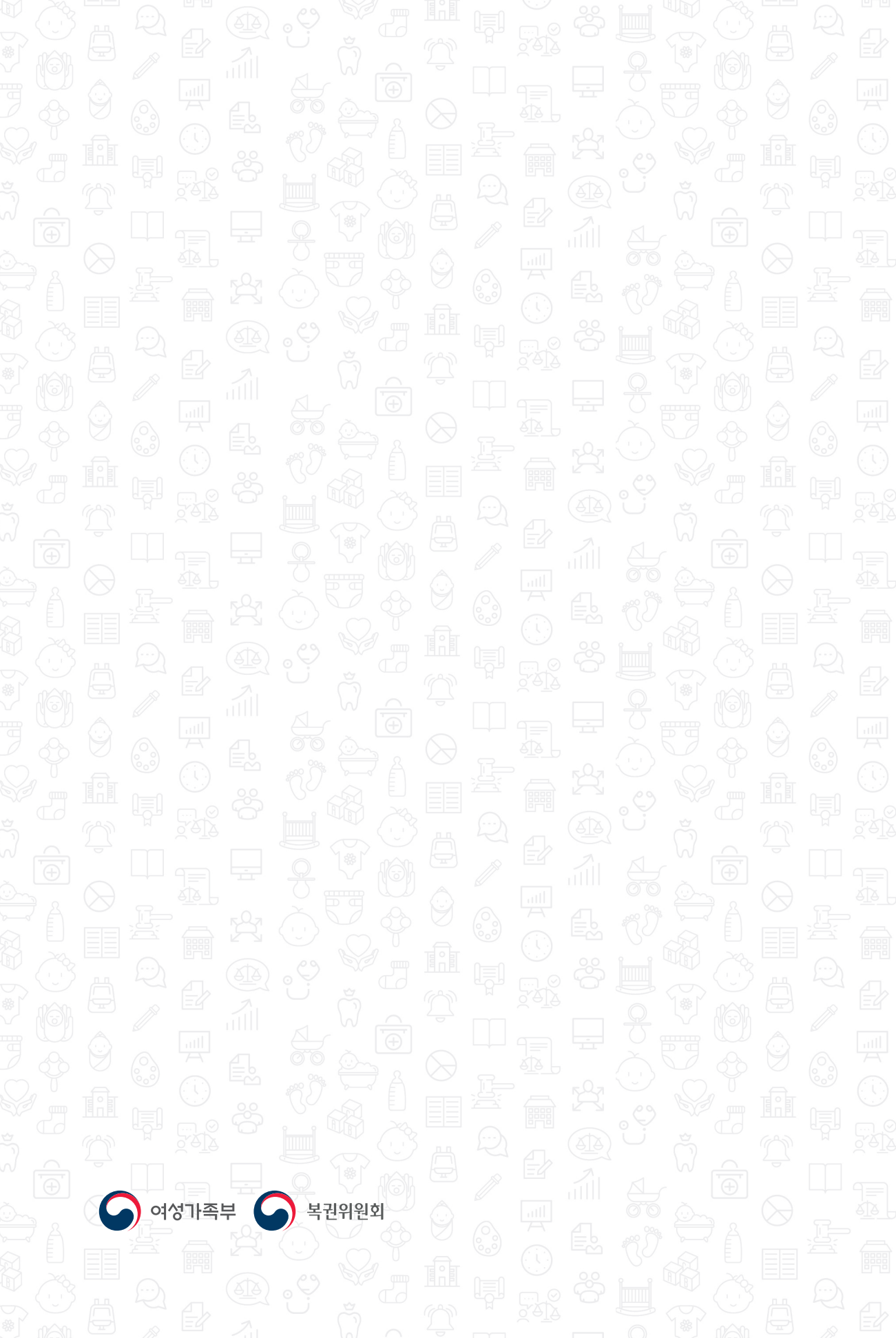
[www.mogef.go.kr](http://www.mogef.go.kr)



여성가족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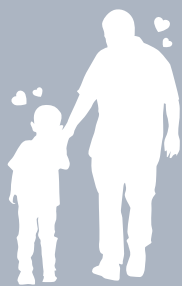
복권위원회





2023년  
**한부모가족  
복지서비스  
종합안내서**

[www.mogef.go.kr](http://www.mogef.go.kr)



## 한부모 가족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세요

- 1. 미혼모·부 등 가족이 상담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주세요.**
- 2.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해서 상담해주세요.**
  - 상담실이 없을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낮춰서 응대해주세요.
- 3.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은 삼가 해주세요.**
  - “아이 아빠는 없어요?”, “어쩌다 혼자가 됐어요?” 등의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.
- 4.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사용하지 말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주세요.**
  - “네가 엄마야?”, “냥을지 말지 잘 생각 했었어야지.” 등의 표현은 하지 말아주세요.
- 5. “안돼요, 모르겠는데요.”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.**
- 6.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.**
  - 후원물품 수령 등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.
- 7.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에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주세요.**
- 8. 임신·출산부터 양육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.**
  - 지자체의 자녀 양육지원 제도, 한부모가족 상담전화(1644-6621), 아동양육비 및 미혼모부자가족복지시설 등에 대해 안내해주세요.
  - 출생신고가 안 된 자녀를 둔 미혼부에게는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전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(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, 아동수당, 보육료, 가정양육수당, 건강보험 등)에 대해 꼭 알려주세요.
- 9. 임신, 출산, 양육상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등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알려주세요.**
- 10. <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안내>를 교부해주세요.**
  - 실물 책자·리플릿이 없는 경우, 여성가족부 누리집([www.mogef.go.kr](http://www.mogef.go.kr))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.

## 01 임신·출산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임신·출산·진료비 지원(국민행복카드) | 08 |
| 산모건강 관리              | 08 |
|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     | 08 |
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    | 09 |
| 출산비용 지원              | 09 |
| 생애 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       | 09 |
| 미혼모자 시설(기본형)         | 10 |
| 첫만남이용권(국민행복카드)       | 10 |

## 02 양육·돌봄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       | 12 |
|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          | 13 |
|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             | 13 |
| 긴급복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| 14 |
|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             | 14 |
|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          | 15 |
|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                 | 16 |
| 가족희망드림 지원                    | 16 |
|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      | 16 |
|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         | 17 |
|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         | 17 |
| 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            | 17 |
| 아동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| 17 |
|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(만 3세~5세 누리과정 지원) | 18 |
| 보육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 18 |
| 가정양육수당 지원                    | 19 |
| 부모급여(영아수당) 지원                | 19 |
|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: 드림스타트           | 19 |
| 아이돌봄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지역아동센터 지원                    | 20 |
| 여성청소년 생리대(보건위생물품) 바우처 지원     | 21 |
| 가사·간병 방문 지원                  | 21 |
|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             | 21 |
|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| 22 |
| 공동육아나눔터                      | 22 |
| 초등돌봄교실                       | 22 |

## 03 시설·주거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         | 24 |
|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| 25 |
| 공공주택 지원              | 25 |



## 04. 교육·취업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       | 28 |
|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                | 28 |
|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        | 29 |
| 자녀 교육비 지원                  | 29 |
|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               | 29 |
| (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,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) |    |
|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           | 30 |
| 국민취업지원 제도                  | 30 |
|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          | 30 |

## 05 금융·법률

|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|----|
|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| 32 |
|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 | 32 |
| 미소금융          | 33 |
| 근로장려금         | 33 |
| 자녀장려금         | 34 |
| 소액보험          | 34 |
| 희망저축계좌I       | 35 |
| 희망저축계좌II      | 35 |
| 청년내일저축계좌      | 35 |

## 06 기타

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요금감면 혜택             | 36 |
| 스포츠 강좌 이용권          | 37 |
|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    | 37 |
| 4대공·종묘·조선왕릉 무료입장    | 37 |
|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        | 38 |
| 출생신고 완료 전 미혼부 자녀 지원 | 39 |
|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절차도     | 40 |
|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관련 용어   | 41 |
| 법률지원                | 41 |
| 제재조치                | 42 |
| 추심지원                | 42 |
| 상담지원                | 42 |
| 모니터링                | 43 |
| 면접교섭                | 43 |
|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      | 43 |





---

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 
미혼모 · 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 
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

---



## 임신·출산·진료비 지원(국민행복카드)

- **지원대상** 임신·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)
- **지원내용**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 제공
  - 임신1회당 100만원 (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,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)
  - 카드 수령후 분만예정(출산일, 유산일, 사산일)일로부터 2년까지

###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- **지원대상**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
- **지원내용**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추가 지원
- **신청문의**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
☎ 1566-3232(단축번호4), [www.socialservice.or.kr/](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/)

- **신청문의**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 
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 / 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 산모건강 관리

- **지원대상**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
- **지원내용** 산전혈액검사, 철분제/엽산제 지원,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, 임신부 배려 엠블럼 제공,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신부의 건강 보호
- **신청문의** 보건소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##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

- **지원대상** 19대 고위험 임신질환\*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임신부

| 대상 질환  | 지원기간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|
| 조기진통(O60), 양막의 조기파열(O42)   |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|
| 분만관련 출혈(O67, O72), 중증 임신중독증(O11, O14, O15), 태반조기박리(O45), 전치태반(O44, O69.4), 절박유산(O20.0), 양수과다증(O40), 양수과소증(O41.0)   | 임신주수 20주 이상        |
| 분만전출혈(O46), 자궁경부무력증(O34.3), 고혈압(O10, O13, O16), 다태임신(O30, O31), 당뇨병(O24)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(O21.1), 자궁내 성장제한(O36.5)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(O23.5, O34.0, O34.1, O34.4, O34.8, O41.1), 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(N00~N23) 및 심부전(I00~I52) | 입원치료 전 기간          |

- **지원내용**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% 지원 (병실입원료, 환자특식 제외)
- **신청문의** 보건소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/ 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- **지원대상**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(예정)가정  
※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
- **지원내용**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- **신청문의** 보건소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## 출산비용 지원

- **지원대상**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·의료·주거급여수급자, 긴급복지지원대상자, 등록 여성장애인
- **지원내용** 출산비용 지급  
- 기초생활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, 긴급복지지원대상자 : 아이 1인당 70만원  
- 등록 여성장애인 : 아이 1인당 100만원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시·군·구청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·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,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.

- **문의**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
##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

- **지원대상** 보건소에 등록, 서비스 신청한 임신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
- **지원내용**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, 영아 발달상담, 양육교육,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
- 산모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·사회적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
- **신청문의**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\*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---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(39개 보건소, '22.10월) ---

서울(강북구, 서초구), 부산(연제구, 동래구, 북구, 영도구), 대구(북구), 울산(중구, 남구, 동구, 북구), 세종, 경기(성남시 분당구, 구리시, 오산시), 강원(속초시), 충남(아산시), 전북(김제시), 전남(해남군, 화순군, 순천시, 장흥군, 신안군), 경북(포항남구, 포항북구, 성주군, 영천시, 문경시, 영덕군), 경남(창원통합, 김해시, 진주시, 사천시, 고성군, 남해군, 합천군)

## 미혼모자 시설 (기본형)

- **지원대상** 이혼·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(6개월 미만)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
- **지원내용** 숙식무료제공, 분만 혜택제공, 자립지원, 의료비 등 지원

### < 기본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(미혼의 임신부 입소가능) >

| 지역 | 시설명    | 전화번호         | 지역           | 시설명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울 | 구세군두리홈 | 02-363-4471  | 대전           | 대전자모원     | 042-934-6934 |
|    | 애란원    | 02-393-4725  | 울산           | 미혼모의집물푸레  | 052-903-9200 |
|    | 마음자리   | 02-2691-4365 |              | 생명의집      | 031-334-7168 |
|    | 마포애란원  | 02-711-4725  | 경기           | 새싹들의집     | 031-457-4383 |
|    | 도담하우스  | 02-449-8893  |              | 광명아우름     | 1600-0152    |
|    |        | 바인센터         | 02-2671-0693 | 강원        | 마리아의집        |
| 부산 | 마리아모성원 | 051-253-7543 | 충남           | 구세군아름드리   | 041-568-0691 |
|    | 성현원    | 051-545-9272 | 전북           | 기쁨의하우스    | 063-853-9616 |
|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전남           | 성모의집      | 061-279-8004 |
| 대구 | 가톨릭푸름터 | 053-764-8537 | 경북           | 누리영타운     | 054-772-5440 |
| 인천 | 인천자모원  | 032-772-0071 | 경남           | 생명터미혼모자의집 | 055-231-0582 |
| 광주 | 엔젤하우스  | 062-651-8585 | 제주           | 애서원       | 064-773-2010 |

※ 기본형 미혼모자복지시설 외, 공동형 미혼모자복지시설, 모자가족복지시설, 부자가족 복지시설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'주거지원' 부분 참고

- **입소문의** 해당 시설 및 지자체 / 한부모 상담전화 ☎ 1644-6621  
여성가족부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 첫만남이용권 (국민행복카드)

- **지원대상** '22.1.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
- **지원내용** '22.4.1일부터 아동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(국민행복카드)
- **사 용 처** 유희·사행 업종, 레저업종,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

---

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 
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

---

##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

- **지원대상** (복지급여 지원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
 (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
 ※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+재산(주택, 토지, 예·적금, 자동차 등)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- **지원기준**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(중위소득 60% 이하)  
 \*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: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
(단위:원/월)

| 구분       | 2인        | 3인        | 4인        | 5인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중위소득 60%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

- **지원내용**
  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
    -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
  -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
    -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
    -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/  
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
  - 아동교육 지원비 :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.3만원
  -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한부모 상담전화 ☎ 1644-6621  
 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#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부정수급 신고 협조요청

- **신고대상** 소득재산 축소신고, 동거 및 위장이혼 등 사실혼 관계, 혼인관계 변동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받은 자
- **신고방법**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([www.clean.go.kr](http://www.clean.go.kr)), 국민신문고 사이트 ([www.epeople.go.kr](http://www.epeople.go.kr)) 신고, 해당 지역 시·군·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또는 통합조사팀
- **신고문의** 한부모상담전화(1644-6621), 국민권익위원회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(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)
- **조치사항**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조치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9조 제4항에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이하의 벌금, 구류, 또는 과료에 처한다’ 라고 규정하고 있음

##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

- **지원대상** (복지급여 지원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
(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
※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
- **지원기준**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(기준중위소득 65% 이하)  
\*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: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

(단위:원/월)

| 구분       | 2인        | 3인        | 4인        | 5인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중위소득 65% | 2,246,501 | 2,882,630 | 3,510,627 | 4,114,947 |
| 중위소득 72% | 2,448,432 | 3,193,068 | 3,888,694 | 4,558,095 |

- **지원내용**
  -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
  -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
    - 아동 1인당 월 35만원
  -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: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
  - 자립촉진 수당 :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한부모 상담전화 ☎ 1644-6621  
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
- **지원대상**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부,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
- **지원기준**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(중위소득 60% 이하)

(단위:원/월)

| 구분       | 3인        | 4인        | 5인        | 6인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중위소득 60%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 4,336,789 |

- **지원내용**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: 자녀 1인당 월 20만원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한부모 상담전화 ☎ 1644-6621

## 긴급복지 지원

- **지원대상** 갑작스러운 위기상황(이혼, 실직, 질병 등)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
- **지원기준** (소득)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(3인 기준 3,326,112 이하)  
(재산) 대도시(특례시 포함) 241백만원, 중소도시 152백만원,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
\*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: 대도시 69백만원, 중소도시 42백만원, 농어촌 35백만원  
(금융재산) 6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)
- **지원내용** 생계·의료·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시·군·구청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##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

- **지원대상**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(아토피, 천식 등) 어린이 거주 가구
- **지원내용**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, 친환경 주거개선(친환경 도배, 장판, 페인트 등), 환경성 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 지원  
※ 지자체(시군구)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
- **신청문의** 시·도 및 시·군·구 환경정책과(또는 환경업무 부서)  
한국환경산업기술원 ☎ 02-2284-1813, 1819

##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

- **지원대상**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 청소년한부모\* 가구,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·부자  
\*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
- **지원내용**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·부의 양육·자립 지원  
\* 지원대상자에게 각종 정부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,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·제공
  - **(정부 서비스 연계)** 양육·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\*를 연계·제공(신청 대행 포함)
    - \* (생활지원) 임신·출산 의료비, 건강관리, 양육(돌봄) 서비스 지원 연계 등
    - \* (자립지원) 주거 지원, 취업 지원(직업훈련등),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
    - \* (기타지원)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, 지역사회 자원 활용·연계 등
  - **(정서 지원 등 서비스)** 상담, 전문심리치료, 멘토링, 양육용품·병원비(연 100만원 이내)지원, 자조모임 지원 등

### < 전국 사업수행기관 안내 >

| 연번 | 시도 | 사업수행기관명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| 연번 | 시도 | 사업수행기관명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|
|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 | 서울 |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| 02-861-3020   | 11 | 경기 | 경기북부<br>한부모가족거점기관 | 070-7776-2980 |
| 2  |    |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| 02-704-4750   | 12 |    | 강원                |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 |
| 3  | 부산 | 부산미혼모·부자지원센터  | 051-253-5235  | 13 | 충북 | 새생명지원센터           | 1577-3053     |
| 4  | 대구 | 대구서구가족센터      | 053-355-8042  | 14 | 충남 |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 | 070-7733-8318 |
| 5  | 인천 | 계양구가족센터       | 032-547-1015  | 15 | 전북 |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 | 063-231-0386  |
| 6  | 광주 | 광주남구가족센터      | 070-4204-6314 | 16 | 전남 | 여수시가족센터           | 061-659-4172  |
| 7  | 대전 | 대전광역시가족센터     | 042-932-9991  | 17 | 경북 | 칠곡군가족센터           | 054-975-0831  |
| 8  | 울산 | 물푸레 복지재단      | 052-954-0100  | 18 | 경남 |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      | 070-4334-5335 |
| 9  | 경기 |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| 031-501-0033  | 19 | 제주 | 제주시가족센터           | 064-725-7015  |
| 10 |    |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| 031-241-0328  |    |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
- **신청문의** 전국 시·도별 사업수행기관 및 한부모 상담전화 ☎ 1644-6621



##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

- **지원대상** 갑작스러운 위기상황(이혼, 실직, 질병 등)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
※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+재산(주택, 토지, 예·적금, 자동차 등)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
### <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>

(단위:원/월)

| 구분   | 1인가구      | 2인가구      | 3인가구      | 4인가구      | 5인가구 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생계급여 | 623,368   | 1,036,846 | 1,330,445 | 1,620,289 | 1,899,206 |
| 의료급여 | 831,157   | 1,382,462 | 1,773,927 | 2,160,386 | 2,532,275 |
| 주거급여 | 955,830   | 1,589,831 | 2,040,016 | 2,484,443 | 2,912,117 |
| 교육급여 | 1,038,946 | 1,728,077 | 2,217,408 | 2,700,482 | 3,165,344 |

- **지원내용** 생계비, 의료비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지급  
\*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생계·의료·교육급여 문의 :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☎ 129  
주거급여 문의 : 주거급여콜센터 ☎ 1600-0777  
교육급여 문의 : 교육급여콜센터 ☎ 02-6222-6060

이 외, 갑작스러운 위기사유(실직, 임신·출산 등)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,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로 문의바랍니다.

## 가족희망드림 지원

- **지원대상**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(손)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·조손가족, 청소년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
- **지원내용** 사례관리, 자녀대상 학습·정서지원, 생활·도움 서비스 등 제공\* 및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, 긴급심리·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
\* 청소년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·정서지원 가능하며, 상담·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
- **신청문의** 가족센터 대표번호 ☎ 1577-9337, [www.familynet.or.kr](http://www.familynet.or.kr)  
가족상담전화 ☎ 1644-6621

##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- **지원대상**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(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)  
\* (미숙아)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(NICU)에 입원 치료한 경우  
(선천성이상아) 출생 후 1년 이내에 "선천성이상질환"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
- **지원내용**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

| 구분        | 미숙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선천성 이상아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| (출생시 체중)<br>2.0~2.5kg 미만,<br>재태기간 37주 미만 | 1.5~2.0kg 미만 | 1~1.5kg 미만 | 1kg 미만 |         |
| 1인당 지원 한도 | 3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백만원         | 7백만원       | 1천만원   | 5백만원    |

- **신청문의** 보건소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/ 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

- **지원대상** (검사비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영아(다자녀-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) (환아관리)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(소득수준 무관)
- **지원내용** (검사비)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(환아관리) 특수식이(특수조제분유, 저단백헛반)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 지원
- **신청문의** 보건소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 
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- **지원대상**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영아(다자녀-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)
- **지원내용** (검사비)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(보청기)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양측 지원
- **신청문의** 보건소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 
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 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

- **지원대상** 만 2세 미만(0 24개월)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\*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가구,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  
\*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(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
- **지원내용** 기저귀(월 64천원) 및 조제분유(월 86천원)\*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
\* 조제분유 :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·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아동·한부모(부자·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
- **신청문의** 보건소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 
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 아동 수당

- **지원대상** 만 0~8세 미만 모든 아동(0~95개월까지 아동)
- **지원내용**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(최대 96개월 간 지급)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 
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 / 정부24 [www.gov.kr](http://www.gov.kr)

##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(만 3세~5세 누리과정 지원)

- **지원대상**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
- **지원내용**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50,000원 추가 학비 지원 (시·도 교육청 지원)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 
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 보육료 지원

- **지원대상**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~5세 아동 (소득수준 무관)
  -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 
[ 1순위 항목당 100점(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점), 2순위 항목당 50점 ]
    - 1순위 법정한부모, 맞벌이인 경우(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)등
    - 2순위 기타 한부모·조손가족,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·자매 등
- **지원내용** 나이에 따라 월28~49.9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어린이집(보육료)  
\*기본보육(09:00~16:00)기준

(단위:원/월)

| 만0세     | 만1세     | 만2세     | 만3세     | 만4세     | 만5세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499,000 | 439,000 | 364,000 | 280,000 | 280,000 | 280,000 |

- \*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
- \*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,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
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 
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연장보육시간(16:00~19:30)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야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.

- ※ '20년 3월 1일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'기본보육'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'연장보육'으로 구분되어 시행합니다.  
(0~2세반 영아의 경우 연장보육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필요)

## 가정양육수당 지원

- **지원대상** 어린이집·유치원(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)·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(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)  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'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- **지원내용** 월령에 따라 월 10만원~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

| 연령              | 금액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|
| 12개월 미만         | 20만원 |
| 12개월 이상~24개월 미만 | 15만원 |
| 24개월 이상~86개월 미만 | 10만원 |
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 
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# 시간제보육 지원

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(현금)를 지원받는 6개월~36개월 미만 영아는 지정된 제공기관(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\* 예약: 임신육아종합포털([www.childcare.go.kr](http://www.childcare.go.kr)), 아이사랑 모바일 앱(app) 또는 전화(☎1661-9361)

## 부모급여(영아수당) 지원

- **지원대상** 만0-1세 아동('23년생부터)
- **지원내용** 가정양육시 현금지원,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,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(가, 나, 다형) 지원 中 택1  
\* 부모급여(영아수당), 보육료,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(서비스 간 변경 가능)

| 지원금액 | 부모급여(영아수당)           | 보육료         | 종일제아이돌봄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| 70만원(만0세), 35만원(만1세) | 이용권(바우처) 지원 | 이용권(바우처)지원 |
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 
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: 드림스타트

- **지원대상** 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1학년 이하)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, 임산부  
\* (기본대상)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 가정 등  
\* (특화대상) 농산어촌 기초단체(82개)의 법정한부모 외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, 다문화, 조손가정
- **지원내용**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/건강, 인지/언어, 정서/행동, 부모/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 
\* 아동 :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영양교육, 기초학력 검사, 언어치료, 독서지도, 심리상담 및 치료,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, 소방 및 안전 교육, 학대 및 (성)폭력 예방 교육  
\* 임산부 : 산전 및 산후 검진, 예비부모 교육  
\* 부모 :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 
아동권리보장원 [www.dreamstart.go.kr](http://www.dreamstart.go.kr), ☎ 02-6454-8500

## 아이돌봄 서비스

- **지원대상**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, 취업 한부모 가정, 장애부모 가정,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
- **지원내용**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,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
  - \* 종일제 돌봄 : 만 3~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, 젖병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
  - \* 시간제 돌봄 :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, 놀이활동, 식사·간식제공, 등·하원(교)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

| 유형 | 소득기준<br>(중위소득)<br>* 4인가구 기준 | 시간제<br>(0~12세, 시간당 10,550원)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영아종일제<br>(시간당 10,550원) |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학전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취학후    |         | 0 ~ 2세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부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부담    | 정부지원   | 본인부담    | 정부지원                   | 본인부담    |
| 가형 | 75% 이하                      | 8,968원                      | 1,582원  | 7,913원 | 2,637원  | 8,968원                 | 1,582원  |
| 나형 | 120% 이하                     | 6,330원                      | 4,220원  | 2,110원 | 8,440원  | 6,330원                 | 4,220원  |
| 다형 | 150% 이하                     | 1,583원                      | 8,967원  | 1,583원 | 8,967원  | 1,583원                 | 8,967원  |
| 라형 | 150% 초과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,550원 | -      | 10,550원 | -                      | 10,550원 |

- \* 휴일 및 야간(22시~익일 06시) 이용요금의 50% 가산
- \* 가형(한부모, 장애부모, 장애아동, 청소년부모)가정은 5% 추가 정부지원

- **신청문의** [정부 지원 가정]  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, 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 신청
- [정부 미지원 가정(본인부담)]  
아이돌봄 누리집 [idolbom.go.kr](http://idolbom.go.kr) 회원가입 후 신청  
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☎ 1577-2514

아이돌봄서비스 이외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초등돌봄 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,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로 문의 바랍니다.

## 지역아동센터 지원

- **지원대상** 방과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한부모·조손가정,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
- **지원내용** 아동보호(안전교육, 급식), 교육(일상생활 지도, 학습능력 제고), 정서적 지원(상담, 가족지원), 문화서비스(체험활동, 공연), 지역연계(인적·기관연계)
- **신청문의**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·군·구 / 정부24 [www.gov.kr](http://www.gov.kr)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##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

- **지원대상** 만 9~24세 여성청소년  
\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  
\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**지원내용**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(월 13,000원, 연 156,000원)  
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

### <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>

| 카드사    | 온라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오프라인   |
|--------|--|--|
| BC카드   | 지마켓, 옥션,<br>먼슬리싱(앱), 페이북쇼핑,<br>우리WON마켓 | 홈플러스(익스프레스 포함), 농협하나로마트,<br>이마트, 이마트 트레이더스, 노브랜드, PK마켓,<br>CU편의점, GS25편의점<br>GS더프레시, 부츠(boots) |
|        | 국민행복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| 삼성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롯데카드   | 올마이쇼핑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홈플러스(익스프레스 포함), 농협하나로마트, 롯데마트,<br>VIC마켓, CU편의점, GS25편의점  |
| KB국민카드 | KB국카몰, 국민행복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S25편의점, CU편의점   |
| 신한카드   | 국민행복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☎ 1566-3232  
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

## 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- **지원대상** 갑작스러운 질병과 생활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
- **지원내용** 월 24시간 ~ 40시간 가사·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 
\*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, 차액은 본인부담  
\* 서비스 비용 : 24시간(월 398,400원), 27시간(월 448,200원), 40시간(월 664,000원)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##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

- **지원대상**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, 자활지원 가능 가구
- **지원내용**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·보건·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통합 연계·제공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## 육아종합지원센터

- 지원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
- 지원내용 안전한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, 장난감 및 도서대여, 육아프로그램 운영 등
- 신청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☎ 1577-0756, ☎ 02-701-0431, [central.childcare.go.kr](http://central.childcare.go.kr)  
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## 공동육아나눔터

- 지원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
- 지원내용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, 장난감 및 도서대여, 프로그램 운영, 돌봄품앗이 지원 등
- 신청문의 가족센터(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) ☎ 1577-9337

## 초등돌봄교실

-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
※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
- 지원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·도서·휴식 등 개인활동, 급·간식 지원

|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|
| 단체활동 프로그램 |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·체능,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<br>※ 음악줄넘기, 북아트, 전래놀이, 생활체육, 창의로봇, 악기연주 등 |
| 개인활동 프로그램 | 숙제하기, 일기쓰기, 독서활동, 휴식 등  |
| 급·간식      |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·간식 제공   |

※ 급·간식비 및 일부 프로그램에는 수익자 부담

- 신청문의 자녀 재학(입학 예정) 초등학교, 가정통신문  
교육부 민원콜센터 ☎ 02-6222-6060



---

한부모 · 조손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 
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

---



## 한부모가족 복지시설

- **지원대상**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모·부자가족, 미혼모·부자가족, 조손가족)
- **지원내용**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, 아이돌봄서비스·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

| 시설유형           | 입소대상   | 입소기간(연장)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
| 모자가족<br>복지시설   |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년(2년)   |
|                |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             | 2년(1년)   |
|                | 자립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, 기본 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| 3년(2년)   |
| 부자가족<br>복지시설   | 기본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년(2년)   |
|                |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             | 2년(1년)   |
|                | 자립생활지원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|
| 미혼모자가족<br>복지시설 | 기본생활지원 이혼·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(6월 미만) 지원을 요하는 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(6월)   |
|                | 공동생활지원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| 2년(1년)   |
|                |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  | 2년(6월)   |
| 일시지원복지시설       |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                        | 6월(6월)   |

- **신청문의** 시·군·구청 / 한부모 상담전화 ☎ 1644-6621  
여성가족부 누리집 <http://www.mogef.go.kr>

시설 입소자의 경우, 자립준비금 공제제도(시설 입소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40%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'자립준비금'으로 인정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)를 통하여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##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

- **지원대상**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
- **지원내용**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, 자조모임,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  
(6년 이내, 2년마다 자격심사하여 연장여부 결정)

| 권역 | 운영기관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 권역 | 운영기관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서울 |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  | 02-363-5722  | 강원 | 원주시가족센터      | 033-765-8314  |
|    | 한국미혼모네트워크     | 02-734-5007  |    | 충북           | 새생명지원센터       |
| 부산 |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| 051-330-3426 | 충남 |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| 070-7733-8313 |
| 대구 | 대구서구가족센터      | 053-355-8042 | 전북 |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| 063-280-2522  |
| 인천 | 인천남동구가족센터     | 032-773-0297 | 경북 | 포항시가족센터      | 054-244-9701  |
| 광주 | 광주동구가족센터      | 062-234-6053 | 경남 |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| 055-244-8335  |
| 대전 | 홀트아동복지회(아침뜰)  | 042-585-3004 | 제주 | 사회복지법인 청수    | 064-773-9952  |
|    | 홀트아동복지회(고운뜰)  | 031-216-9081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경기 |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| 031-501-0033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
- **신청문의** 시·군·구청 / 한부모 상담전화 ☎ 1644-6621

##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

- **지원대상**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
- **지원내용**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

|      | 주택 유형            | 순위 및 내용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공공분양 | 공공분양주택*          | 신혼부부 특별공급 (1순위)   |
|      | 신혼희망타운주택*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녀나이가 2세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</li> <li>▪ 자녀나이가 3세 이상 6세 이하일 경우 잔여공급</li> </ul>  |
|      | 영구임대             | 1순위   |
|      | 국민임대             | 우선공급 대상,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  |
|      | 행복주택             | 신혼부부, 한부모 계층 물량 내에서 추첨(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, 산업단지근로자 자격충족 시 1순위, 미충족 시 추첨)  |
|      | 분양전환공공임대(5년·10년) | 특별공급(기관추천)  |
| 공공임대 | 기존주택 매입임대        | 1순위(보호대상 한부모가족)   |
|      | 매입임대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년매입임대 1순위(보호대상 한부모가족)</li> <li>신혼부부 매입임대* 1순위(보호대상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)</li> </ul>  |
|      | 전세임대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(보호대상 한부모가족)</li> <li>청년전세임대 1순위(보호대상 한부모가족)</li> <li>신혼부부 전세임대* 1순위(보호대상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)</li> <li>다자녀 전세임대 1순위(보호대상 한부모가족)-조손가정 포함</li> </ul> |

\* '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'을 말함

- **신청문의** 시·군·구청 / 시·도 도시공사 / 한국토지주택공사 ☎ 1600-1004, [www.lh.or.kr](http://www.lh.or.kr)





---

일 자리를 찾고 계신가요?  
자립하고자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 
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

---

##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

- 지원대상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
※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

<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>

| 지역     | 시설명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 지역 | 시설명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울     | 나래대안학교   | 02-393-4720  | 강원 | 마리아의집             | 033-264-0194 |
| 부산     | 마리학교     | 051-253-7543 | 충북 | 청주해오름마을           | 043-285-4438 |
| 대구, 경북 | 가톨릭푸름터   | 053-764-8537 | 충남 | 구세군아름드리           | 041-568-0691 |
| 인천     | 인천자모원    | 032-772-0071 |    | 천안새소망의집           | 041-568-0695 |
| 광주     | 엔젤하우스    | 062-651-8585 | 전북 | 민들레학교             | 063-283-1356 |
| 대전, 세종 | 대전자모원    | 042-934-6934 | 전남 | 성모의집              | 061-279-8004 |
| 울산     | 미혼모의집물푸레 | 052-903-9200 | 경남 | 범숙학교              | 055-298-1127 |
| 경기     | 아우름 대안학교 | 02-1600-0152 | 제주 | 사회복지법인청수<br>(애서원) | 064-773-2010 |
|        | 나래대안학교   | 02-393-4720  |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- 신청문의 해당기관, 시·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 
한부모 상담전화 ☎ 1644-6621 / 여성가족부 누리집 <http://www.mogef.go.kr>

## 여성새로일하기 센터

- 지원대상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·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등
- 지원내용 상담, 직업교육훈련, 취업연계, 여성창업 지원,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
  - 직업상담 개별상담, 집단상담 프로그램, 취업정보 제공
  - 직업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, 새일역량교육
  - 취업연계 적성검사·직업교육 이수현황·경력사항 등을 토대로 취업연계, 동행면접, 인턴십 지원
  - 여성창업 예비창업자 발굴, 정보 제공,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훈련 지원
  - 사후관리지원 직장적응 교육, 고충상담,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
- 신청문의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상담전화 ☎ 1544-1199  
여성가족부 누리집 <http://www.mogef.go.kr>  
\* 각 센터별 문의 후 신청

##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

-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초등4학년~중등3학년)
- 지원내용 급식, 보충학습,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(문화예술, 체육, 과학, 진로개발, 자원봉사, 동아리 활동 등) 운영
- 신청문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☎ 02-330-2831~4  
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[www.youth.go.kr/yaca/index.do](http://www.youth.go.kr/yaca/index.do)

## 자녀 교육비 지원

-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대상자, 기타 저소득층
- 지원내용 고교 학비, 학교급식비,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지원(PC 및 인터넷 통신비)
- 신청문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복지로 누리집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  
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<http://oneclick.moe.go.kr>

## 청소년치료재활센터(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)

- 지원대상 우울증, 불안장애, 학교부적응,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(ADHD),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이거나 정서·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(만 9세~18세)  
※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
- 지원내용 정서·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(4개월), 오름과정(1개월), 단기과정(11박 12일) 제공  
상담·치료(정신의학적 상담), 보호(거주형 보호시설), 교육(검정고시 지원), 자립지도(직업교육, 체험활동 등) 지원  
※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교육청, 학교, 가족센터 등 기관 및 개인 신청 가능
- 신청문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☎ 031-333-1900, [www.nyhc.or.kr](http://www.nyhc.or.kr)  
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☎ 053-665-6914, [www.youthfly.or.kr](http://www.youthfly.or.kr)

##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

● 지원대상

| 지원사업  | 지원대상          | 지원내용 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장학금   | 국가 장학금        |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<br>대학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원<br>(연 350만원~등록금 전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국가근로 장학금      |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<br>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원<br>(시급단가 : 교내 9,620원, 교외 11,150원)                     |
| 학자금대출 |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| 학부생 및 대학원생(소득요건 有)<br>대출금리 1.7%(‘22.2학기 기준, 변동금리)<br>등록금대출(한도 내 실소요액)<br>생활비대출(학기당 150만원) |
|       |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  | 학부생 및 대학원생<br>대출금리 1.7%(‘22.2학기 기준, 고정금리)<br>등록금대출(한도 내 실소요액)<br>생활비대출(학기당 150만원)         |

※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

●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[www.kosaf.go.kr](http://www.kosaf.go.kr), ☎ 1599-2000

## 국민취업지원 제도

-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~69세 이하의 저소득층, 미혼모, 한부모 등
-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
  - (공 통)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
  - (I 유형)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+부양가족\* 1인당 10만원(월 최대 40만원) 추가 6개월간 지원  
\*미성년자, 70세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
  - (II 유형) 취업활동계획 수립,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지원
-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☎ 1350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
[www.kua.go.kr](http://www.kua.go.kr)

##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

- 지원대상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인 근로자로서 「남녀고용평등법」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-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월 250만원),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월 150만원) 지급

| 기준     | 지급액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첫 3개월  | 100% (상한 250만원) |
| 4~12개월 | 80% (상한 150만원)  |

●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☎ 1350



---

어렵게만 느껴지는 ‘법’,  
이제 법 전문가가 대신해 드립니다

---



##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

- **지원대상** 만 19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·조손가족
- **지원내용** 양육비 상담, 협의, 소송,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
- **신청문의** 한부모 상담전화 ☎ 1644-6621  
\* 양육비 상담 운영시간: 월~금 09:00~18:00(점심시간12:00~13:00제외)  
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[www.childsupport.or.kr](http://www.childsupport.or.kr)

###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

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9개월 간(최장 1년)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(한부모 상담전화 ☎ 1644-6621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

- **지원대상**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의 한부모가족  
\*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·부,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
- **지원내용** 한부모가족에게 민·가사 사건,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(법률상담, 소송 대리 등)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
- **신청문의** 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, 한국가정법률상담소 ☎ 1644-7077  
\*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지원 포함

## 미소금융

- **지원대상**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(창업예정자 포함) 및 취약계층
- **지원내용**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,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·무보증 연 2~4.5%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

### < 대출종류 >

| 구분         | 대출한도  | 대출기간<br>(거치기간 제외) | 금리    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창업자금       | 7천만원  | 5년 이내             | 2~4.5% |
| 운영자금       | 2천만원  | 5년 이내             | 2~4.5% |
| 시설개선자금     | 2천만원  | 5년 이내             | 4.50%  |
| 취업성공대출     | 3백만원  | 3년 이내             | 4.50%  |
| 긴급생계자금     | 1천만원  | 4년 이내             | 4.50%  |
| 교육비지원대출    | 5백만원  | 5년 이내             | 4.50%  |
| 취약계층 자립자금* | 12백만원 | 5년 이내             | 3.00%  |
| 취약계층교육비대출* | 5백만원  | 5년 이내             | 3.00%  |

\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 가구주 등

- **신청문의** 서민금융콜센터 ☎ 1397 / 누리집 [www.kinfa.or.kr](http://www.kinfa.or.kr)

## 근로장려금 (2023년 신청)

- **지원대상**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- **자격요건** (재산)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  
(소득)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

| 구분     | 총소득기준금액    | 최대지급액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단독가구   | 2,200만원 미만 | 150만원 |
| 홀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60만원 |
| 맞벌이 가구 | 3,800만원 미만 | 300만원 |

- **신청기간** (정기신청) 2023년 5월 1일~5월 31일까지  
(기한 후 신청) 2023년 6월 1일~11월 30일까지
- **신청방법** 전자신청(ARS전화 1544-9944, 모바일 손택스앱, 인터넷 홈택스) 또는 서면신청

## 자녀장려금 (2023년 신청)

- **지원대상**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2023.12.31.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
- **자격요건** (재산)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  
(소득)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
- **지원내용**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80만원 지급
- **신청기간** (정기신청) 2023년 5월 1일~5월 31일까지  
(기한 후 신청) 2023년 6월 1일~11월 30일까지
- **신청방법** 전자신청(ARS전화 1544-9944, 모바일 손택스앱, 인터넷 홈택스) 또는 서면신청

## 소액보험 (한부모가정의료보험)

- **지원대상** [1기] (저소득층아동보험II) 한부모가족의 만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(보험기간 : 2020년 07월 31일~2022년 7월 30일)  
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- 생계/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 
[2기] (한부모가정의료보험) 한부모가족의 만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(보험기간 : 2022년 07월 31일~2024년 7월 30일)  
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- 생계/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
- **지원내용** 보험료 무료,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

| 구분  | 보장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장금액    |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기      | 2기      |
| 부양자 | 상해 후유장해(3~100%)                 | 3,000만원 | 3,000만원 |
|     | 질병 후유장해(3~100%)                 | 3,000만원 | 3,000만원 |
|     |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                  | 3,000만원 | -       |
|     | 상해 후유장해(3~100%)                 | 3,000만원 | -       |
|     | 질병 후유장해(3~100%) *만 15세 미만 아동 제외 | 3,000만원 | -       |
| 아동  |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                  | 3,000만원 | -       |
|     | 입원일당(상해/질병), 출산제외               | 3만원     | 7만원     |
|     | 골절진단비(치아파절 포함)                  | 7만원     | 10만원    |
|     | 암진단비(재진단 제외)                    | 1,000만원 | 500만원   |
|     | 수술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만원    | 7만원     |
|     | 탈구, 신경손상, 압착손상 위로금              | 30만원    | 30만원    |
|     | 폭력피해 위로금                        | 100만원   | 100만원   |
|     | 식중독 입원일당, 입원 4일 이상시             | 10만원    | 7만원     |

\* 상세한 보장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소액보험 안내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어,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의 “보험약관”과 “상품안내문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

\* “2020년 7월 31일”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

\* 부득이 사고 직후에 청구가 어려운 경우,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 후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

\* 보험금청구를 위한 양식과 필수서류 목록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소액보험 메뉴에서 “상품안내문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**신청문의** 서민금융콜센터 ☎ 1397, 한부모가정의료보험 ☎ 02-3471-5116, 카카오톡 채널 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, 누리집 [www.kinfa.or.kr](http://www.kinfa.or.kr)

## 희망저축계좌 I

- **지원대상**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 가구
- **자격내용**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5/10만원을 저축하면,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
- **지원요건**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## 희망저축계좌 II

- **지원대상**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
- **자격내용**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, 정부지원금 10만원 지원
- **지원요건**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## 청년내일저축계좌

- **지원대상**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~3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  
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~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5~39세까지 허용)  
(근로·사업소득) 연간 근로·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~2,400만 원 이하  
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연간 근로·사업소득 기준 면제(근로활동이 있어야함)  
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 
(재산)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- **자격내용** 본인 저축액(월 10만 원) 대비 1:1 정부매칭 지원(단, 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1:3 정부매칭 지원)
- **지원요건** 자립역량교육 이수
- **신청문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/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
##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

\*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

| 지원내용  | 신청 및 문의   |
|---|---|
| 건강보험료 경감  |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  |
| 복지용 쌀 할인지원 (기준가격의 60~90%할인)   |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  |
| 지역난방·전기·가스요금감면  |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<br>[전기] 한국전력공사 ☎ 123<br>[가스]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<br>산업통상자원부 ☎ 1577-0900  |
| 에너지효율개선<br>* (난방) 주거지의 단열,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급 지원<br>(냉방) 에어컨 보급 지원  |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<br>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<br>☎ 1670-7653   |
| 에너지바우처<br>* 기초생활수급가구<br>(단,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는 '22년 한시 지원)   |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<br>에너지바우처 콜센터 ☎ 1600-3190<br>복지로누리집<br><a href="https://www.bokjiro.go.kr">https://www.bokjiro.go.kr</a> →<br>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<br>에너지바우처 |
| 이동전화요금 감면<br>●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<br>: 기본료 면제(월 2만6,000원까지), 통화료 50% 감면<br>(월 최대 33,500원 감면)<br>●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<br>: 기본료 면제(월 1만1,000원까지), 통화료 35% 감면<br>(월 최대 21,500원 감면)<br>※ 1인당 1회선(주거/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은<br>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 감면) |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<br>전용 ARS(1523),<br>이동통신사 대리점   |
| 과태료 50% 이내 감면   |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법무부  |
|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<br>(기초생활수급자 면제, 한부모가족 80% 감면)   | 한국교통안전공단 ☎ 1577-0990  |
| 수도요금 감면   |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   |
|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 |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|
|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 | *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|

## 스포츠 강좌 이용권

**지원대상** : 한부모가정 등의 만 5~18세 유·청소년

**지원내용** :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

※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(svoucher.kspo.or.kr)에서 확인

**신청방법** :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
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

※ 대상자 선정 → 전용카드 발급 →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

**신청문의** : 스포츠강좌이용권 ☎ 02-410-1298~9, svoucher.kspo.or.kr

##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

**지원대상** :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**지원내용** : 문화예술·여행·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'문화누리카드' 발급(1인당 연 11만원)

**신청방법** :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/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,  
온라인(www.mnuri.kr, 공식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)

**신청문의** :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☎ 1544-3412, www.mnuri.kr,  
모바일 앱([공식]문화누리카드)

## 4대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입장

**지원대상** : 한부모가족

\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

**지원내용** : 4대궁(경복궁, 창덕궁, 창경궁, 덕수궁)·종묘·조선왕릉 무료입장

**제도문의** :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☎ 02-6540-3800

경복궁관리소 ☎ 02-3700-3900~1

창덕궁관리소 ☎ 02-3668-2300

덕수궁관리소 ☎ 02-771-9951~2

창경궁관리소 ☎ 02-762-4868

종묘관리소 ☎ 02-762-3551~2

세종대왕유적관리소 ☎ 031-885-3123~4

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☎ 031-563-2909

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☎ 02-972-0370

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☎ 02-359-0090

#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, 이렇게 하세요

## 1. 신청 절차



## 2. 도움 받을 수 있는 곳

### ● 대한법률구조공단, 한국가정법률상담소

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25%이하

지원내용 : 유전자 검사비 지원,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(신청)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

신청서류 : 신분증, 도장, 기준 중위소득 125%이하 증빙서류\*,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 사건의 첨부자료(위 신청 절차 참고)

- \* ① 가구원수 확인용 :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및 세대원포함)  
② 건강보험가입여부 확인용 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
③ 기준중위소득 확인용 : (건강보험가입자)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산정내역서 (건강보험미가입자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서 등

문의전화

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, 한국가정법률상담소 ☎ 1644-7077  
한부모가족 상담전화 ☎ 1644-6621(ARS 2번 연결)

#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,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

## 1. 복지서비스 지원

-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
-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하며,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
  - (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) 중위소득 60% 이하\* 한부모가족(청소년한부모는 65%이하)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~3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
    - \*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,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
  - (보육료)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~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~51.4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
  - (가정양육수당)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령에 따라 월 10~20만원의 수당 지급
    - \*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0~1세 부모급여 지원,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  - (아동수당) 만 0~8세 미만 모든 아동(0~95개월까지 아동)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
  - (부모급여) 2022년 이후 출생아동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,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 지급(‘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 100만 원, 만 1세 아동 50만 원)
    - \*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하고,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,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

## 2. 건강보험

### ●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

취득대상 :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

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,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, 전화 등 가능

※ 미혼부 본인신청(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)

제출서류 :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·변동신고서(지역가입자) 또는 피부양자 자격(취득·상실)신고서(직장가입자),

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(소장 사본),

③ 유전자검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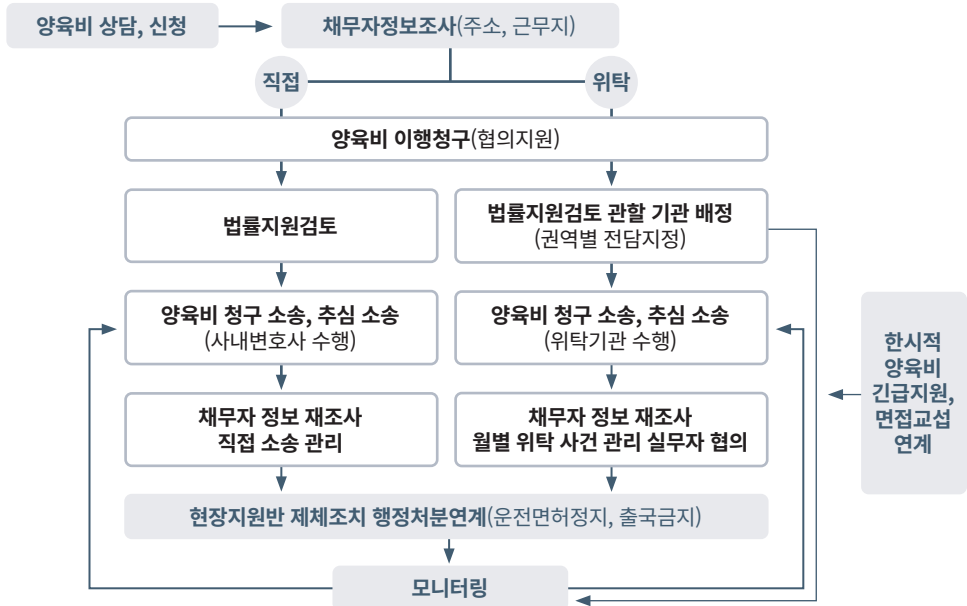
※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'출생증명서'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 추진예정('23년 중)

신청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☎ 1577-1000



#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

##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절차도



\* 양육비청구소송기준 처리일: 총 18개월~ 24개월

\* 모니터링기간: 신청자녀가 만 19세까지 매월 양육비 채권관리

- **(상담신청)** 온·오프라인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및 신청서비스 제공
  - **(정보조사)** 행망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거나 공문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요청
    - 접수단계: 모든 접수건 대상 비양육자, 채무자의 주소, 근무지 조사 실시
    - 사건진행: 채무자 동의시 소득재산조사 실시(한시적 예외)
  - **(협의지원)**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·중재 지원
  - **(법률지원)** 채권이 없는 양육자를 위한 인지·양육비심판청구 소송으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
    - (미혼) 인지소송, (이혼) 양육비심판청구소송
  - **(추심소송)** 채무자가 양육비이행의무 위반시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반 추심소송 지원\*
    - \* 양육비이행명령, 직접지급명령, 담보제공명령, 일시금지급명령,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, 강제경매 및 강제집행, 감치명령, 재산명시, 재산조회
  - **(제재조치)**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
    - 현장지원반: 경찰서 협조공문요청, 현장조사, 현장지원을 통한 감치 집행
    - 행정 제재조치: 감치결정 후 미이행시 출국금지·운전면허정지 접수 → 사전통지서 발송(의견수렴) → 공시송달(의견수렴) → 명단 송부
  - **(모니터링)** 자녀가 성년(만19세)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미이행 시 재추심 연계
  - **(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)**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위기 한부모 대상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(1인당 월 20만원, 최장 12개월)
  - **(면접교섭)** 비양육부·모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중재,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- 신청문의: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☎ 1644-6621(ARS 1번 연결)

#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관련 용어를 알아보아요

## 1. 양육부·모

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 (= 채권자 :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)

## 2. 비양육부·모

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고 있는 자 (= 채무자 : 양육비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갖고 있는 자)

## 3. 집행권원

집행력이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, 심판문, 화해조서, 조정조서, 양육비 부담조서,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, 화해권고 결정문, 공정증서 등

## 4. 양육비심판청구소송

당사자 간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양육을 하지 않는 부·모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

## 5. 인지청구소송

미혼(비혼)등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부자 또는 모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, 법률상 친자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

# 법률지원

## 1. 양육비에 관한 법률지원

-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지원
-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으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로 판결문, 심판문, 조정조서, 양육비 부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, 집행권원이 확보된 이후에만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

## 2. 지원 내용

-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
- 기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라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 청구를 지원
-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타의 소송도 함께 지원 가능
  - 양육비 청구에 수반하여 친권자, 양육자의 지정·변경 청구 지원
  - 비혼 한부모가 양육자인 경우 인지 청구 지원, 인지로 자녀의 성·본이 변경되는 경우 성본계속 사용허가청구 지원
  - 조부모 등이 양육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
- 소송 전후 어느 때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원

## 3. 지원 절차

- ① 양육부·모가 법률지원 신청 (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 증액을 요청)
- ② 변호사 상담과 기초사실조사 및 승소 가능성 판단
- ③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
- ④ 추양육비 지급 여부 모니터링 후 미지급시 추심 지원으로 연계

## 4. 필요 서류

-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-40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

신청문의 :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☎ 1644-6621(ARS 1번 연결)

## 제재조치

지원대상 :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
지원내용 :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운전면허정지, 출국금지 처분 신청 지원  
지원요건 : 2021.6.10.(운전면허 정지), 2021.7.13.(출국금지) 이후 감치결정  
신청문의 :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☎ 1644-6621(ARS 1번 연결)

## 추심지원

### 1. 양육비에 관한 추심지원

- 집행권원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추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원

### 2. 추심지원의 내용

-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
  - 채무자의 예금, 급여 등 채권과 재산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
  - 재산명시, 재산조회를 통한 채무자 재산 조사
  -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한 채무자 신용도 하락 유도
- 가사소송법에 의한 이행확보소송
  - 직접지급명령을 통한 채무자 고용주로부터의 직접 지급
  - 이행명령, 감치를 통한 간접강제(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이행하도록 유도)
  - 담보제공명령을 통한 담보 확보 및 담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지급명령 신청
- 양육비이행법에 의한 제재 조치로 연계
  - 감치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정지,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로 연계

### 3. 지원 절차

- ① 양육부·모가 추심지원 신청
- ②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 발송
- ③ 채무자의 지급 의사 및 소득과 재산 등 지급 능력 확인
- ④ 추심을 위한 이행확보소송, 강제집행 등을 진행
- ⑤ 감치결정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제재조치로 연계

### 4. 필요 서류

-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-40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

신청문의 :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☎ 1644-6621(ARS 1번 연결)

## 상담지원

전화(1644-6621), 방문, 온라인을 통하여 양육비로 인한 어려움 및 신청 상담등을 진행하고 있음  
신청문의 :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☎ 1644-6621(ARS 1번 연결)

## 모니터링

**양육비 합의·소송 등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**  
신청문의 :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☎ 1644-6621(ARS 1번 연결)

## 면접교섭

**지원대상** : 면접교섭을 희망하는, 미성년자녀를 둔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

**지원내용** : 면접교섭 관련 중재, 상담,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

- 중재 : 면접교섭 방법·시간·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, 합의 지원
- 상담 : 양육자, 비양육자, 자녀 등 서비스 대상자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
- 모니터링 :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

**신청방법** :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- 자료실 내 <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> 작성

② 구비서류 발급

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
-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 또는 집행권원 1부(자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등)  
※ 단,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생략 가능

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신

- 주소 : (04554)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 이행촉진부(면접교섭)
- 전자우편 : monika6423@kihf.or.kr

신청문의 :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☎ 1644-6621(ARS 1번 연결)

##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

**지원대상** :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

**자격요건** :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, 다만, 양육비 채권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**지원내용** :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 동안 지원(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)

**신청방법** :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([www.childsupport.or.kr](http://www.childsupport.or.kr))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, 우편 접수  
※ 상담 및 문의 : 양육비이행관리원(1644-6621)

**제출서류** : -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

-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, 질환 유무, 생활수준,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

신청문의 :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☎ 1644-6621(ARS 1번 연결)